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지침

제정 2020. 7. 02

개정 2021. 4. 30

개정 2022. 11. 03

개정 2023. 11. 14

[전략기획처 기획예산부 042-600-8144]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2항 및 한국가 스기술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) 정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상임이사 임명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지침은 공사의 상임이사 선임에 관하여 적용한다.
 - ②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법령,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- 제3조(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) 사장은 결원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및 공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, 사내공모, 추천방식 및 공모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 중에서 모집방법을 결정한다.
- 제4조(공개모집에 의한 후보자 모집) 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, 그 모집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신속한 선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,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결원 예정 직위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재공고를 실시한다.

제5조(사내공모에 의한 후보자 모집)

- ① (삭 제) <개정 2023.11.14>
- ② (삭 제) <개정 2023.11.14>
- ③ (삭 제) <개정 2023.11.14>
- ④ 사내공모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, 제4조에서 정한 공개모집에 의한

후보자 모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23.11.14>

- 제6조(추천방식에 의한 후보자 모집) ① 추천방식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관련학계 및 단체, 인사혁신처(국가인재DB), 비상임이사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 - ② 후보자 추천방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문서의 제출로 한다.
- 제7조(공모·추천방식 병행에 의한 후보자 모집) 공모·추천방식 병행으로 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된 후보자는 공모방식에서 정한 제출기간 등 제출방법에 따라 제8조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후보자의 자격 등) ① 응모자 및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. 다만, 후보자 모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4>
 - 1. 가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
 - 2.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
 - 3.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
 - 4.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
 - 5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
 -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(결격사유) 제1항 각 호 및 정관 제20조의2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③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응모자 및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이력서
 - 2. 자기소개서
 - 3. 직무수행계획서
 - 4.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장이 요구하는 자료
- 제9조(상임이사 후보자 심사위원회) ① 사장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상임이사 후보자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03.>
 - ② 위원회는 상임이사 선임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- 1. 다수의 상임이사 직위의 결원 발생 예정 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

- 2. 제12조에 따라 상임이사 선임절차를 재시행 하는 경우
- 3. 기타 사장이 선임 절차의 긴급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공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,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공사 상임이사 1인과 외부전문가(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행정, 경제계, 법조계, 학계 등 해당 분야 종사자) 4인을 사장이 정한다.
- ④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심사기준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
 - 2. 심사결과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자 선정 및 추천
-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.
 - 1.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2. 후보자가 속한 기관과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
 - 3.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⑥ 위원회 위원 또는 후보자는 제6항에 해당하거나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장 또는 위원장에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⑦ 임원 선임 담당자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지원한 사실을 임원 선임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의 정의는 「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3조, 그리고 신고 및 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「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4조에 의한다. <신설 2022.11.03>
- 제9조의 2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1.03>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4. 제9조 제6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0조(심사기준) ① 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될 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.
- ② 사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합격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1.14>

제11조(심사절차 및 방법) ① 위원회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, 직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의 수를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 예정 인원의 적정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.
 - ③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작성으로 한다.
- ④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후보자 1인에 대해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, 소수점은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
 - ⑤ 위원회는 각 심사를 통해 적정 배수의 상임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며, 최종 상임이 사 후보자를 추천한다. <개정 2021.4.30.>, <개정 2022.11.03.>, <개정 2023.11.14.>
 - ⑥ (삭 제) <개정 2023.11.14>

제12조(상임이사 선임절차 재시행)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 절차를 재시행할 수 있다.

- 1. 결원 예정 직위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
- 2. (삭 제) <개정 2023.11.14>
- 3. 사장은 제11조제5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면담,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고,
 - 그 결과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- 4. 제13조에서 인사검증 결과 등을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3조(임명) ① 사장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정부에 인사검증을 요청한다.

- ② 제1항의 인사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후보자에서 제외한다.
- ③ 사장은 제9조 및 제11조, 제1항에 따른 인사검증 등을 거친 최종후보자 중 적 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한다. <개정 2023.11.14>

제14조(업무수행자) ① 상임이사 선임에 관련된 업무는 임원 선임을 담당하는 부서 장이 수행한다.

- ② 제1항의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.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
- 2.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
- 3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, 제14조에 따른 업무수행자 및 소속 직원은 후보자 응모, 추천, 심사과정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실비지급)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범위 내에서 심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1조에 따른 면접심사에 참석한 후보자에게는 면접비 및 여비 등을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기타사항)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임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상임이사 후보자 세부심사기준

구 분	세 부 기 준
1. 가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	○ 가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○ 가스산업에 대한 이해도○ 가스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
2.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	○ 공사 직제규정에 정한 업무분장에 따른 소관부서의 업무별 직무수행 능력과 경험
3.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	○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○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○ 공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능력
4.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	 ○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결집 능력 ○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,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○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 및 조정하는 능력 ○ 노사화합 및 기업의 성장.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
5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	○ 공직자로서의 청렴성, 도덕성, 준법성 보유 및 실천 의지○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○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인품

【별표2】 (삭 제) <개정 2023.11.14>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지 원 서

□ 인적사항

		성 명	[한글]		[한자]		[영	문]	
사진부착	인	생년월일	1							
(3.5cm x 4.5cm)	적 사	주 소								
최근 6개월 이내	항	등록기준지 (본 적)	* 후	보자	게 대해	신원조회시	활용	·함·		
		전 화	[자택 [직징)	<u>-</u>	휴대 폰		E-mail	

□ 학력사항

기 간	학 교 명	전 공	소재지	학 위
년 월 ~ 년 월	고등학교			
년 월 ~ 년 월	대학교	학		
년 월 ~ 년 월	대학원	세부전공: 학		
년 월 ~ 년 월	대학원	세부전공: 학		

□ 병역사항

병역	필, 병역특례, 면제(면제시 사유:)
군 별	계 급 복무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년 개월)

□ 자격사항

	종 류	발행기관	취득년월일		외국어명	점 수	검정기관
자격				О			
및				_,			
면허				학			

□ 경력사항

근무처	근무부서	직위	담당업무	근무기간 (년월 기재)	주요 업적
				~	
				~	
				~	
				~	

□ 관련분야 논문발표	(중요도	순	작성)
-------------	------	---	-----

제 목	주요 내용	게재년월	게재기관

※ 주요사항을 기술하되,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(이하 동일)

□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(중요도 순 작성)

과제명	주요내용	연구기간	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	역 할 (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)

기타 특기사항(포상	등)		

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지 원 자 : (서명)

자 기 소 개 서

※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	
기술하여 주십시오. (분량 : A4용지 3매 내외)	

20 년 월 일

지 원 자 : (서명)

직 무 수 행 계 획 서

*	한국가스기술공사의 공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계획,
	추진전략 및 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(분량 : A4용지 3매 내외)

20 년 월 일

지 원 자 : (서명)

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서

□ 추천직위 : 상임이사(0000본부장)

성명	(한	문:)	생년월일	년 4	월 일
연락처	주소				
	직장/직위				
	연락처	직장전화 :	,	자택전화 :	
		휴대폰 : E-mail :			
	기간	학교	고명	학과/전공	학위
학 력					
주요경력					
추천사유					
추 천 인 인적사항	성명 (기관명)				(인 또는 직인)
	직장/직위				
	연락처				

[※] 추천양식은 추천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상임이사 후보자 서류(면접)심사 평가표

□ 지원자 성명 :

평 가 요 소		평 가 점 수				
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저조
1. 가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		(20)	(18)	(16)	(14)	(12)
2.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		(20)	(18)	(16)	(14)	(12)
3.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		(20)	(18)	(16)	(14)	(12)
4.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		(20)	(18)	(16)	(14)	(12)
5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	20점	(20)	(18)	(16)	(14)	(12)
합계	100점		1		1	

※ 평가방법 : 평가점수란에 "○"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

20 년 월 일

위 원: (서명)

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서

상임이사후보자심사위원회는 상임이사선임에관한지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지원 본부장 직위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함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비고
1			
2			
3			
4			
5			

^{*}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

년 월 일

상임이사후보자심사위원회 위 원 장 (서 명) 위 원 (서 명) 위 원 (서 명) 위 원 (서 명) 위 원 (서 명)